

In depth

A look at curre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A fresh look at IFRS 8, 'Operating segments'

March 2015
No. INT2015-14

At a glance	1
Why it's important	1
Operating segments	2
Reportable segments	5
Segment disclosure requirements	9
Changes to the business	11
More than disclosure	12

At a glance

많은 기업이 부문보고를 단순히 규정준수를 위한 정도로 여기고 있어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IFRS 8 '영업부문'의 주요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그 동안 발견된 실무상의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 전반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부문보고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도 제시하고 있다.

Why it's important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정보는 정보이용자들에게 다음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있다.

- a. 전반적인 기업의 상태
- b. 최근 기간의 주요 거래

이러한 정보는 투자자들이 전반적인 지표(예를 들면, 매출추세, 원가 통제 능력, 유동성 및 사업결합과 같은 주요 거래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유용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전체의 흐름을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업의 웹사이트에서 실적발표를 읽어본다. 이는 상품별 지역별 시장점유율, 개별 고객과의 주요 계약, 또는 성장부문에 대한 투자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사업이 연결실체의 수준보다는 하위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영진은 어디에 현금을 투입하고 간접비를 줄여야 하는지 또는 마케팅활동을 확장할지와 같은 전략적 영업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업의 여러 부문을 통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동일한 수준의 세부적 재무정보를 필요로 한다.

투자자는 그들이 필요한 지표, 즉 미래 현금흐름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시각으로 사업을 보기 원한다. 그들은 특정 산업 내에서의 경영진의 포지셔닝 또는 특정 지역에서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기 원한다. 투자자들은 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경영진이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수준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부문보고는 기업의 통합된 모습과 경영진의 관점 사이의 격차를 이어준다(외부보고와 내부보고의 연계라고 자주 언급). 최상위 수준에서 부문보고는 재무제표를 'Operating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and Financial Review(OFR)'나 '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 (MD&A)'와 같은 이사의 경영진단에 포함된 정보와 연결해준다. 뿐만 아니라 부문공시는 다음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준다.

- 경영진이 자원을 배분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수준
- 경영진이 어떻게 주요 상품군이나 서비스 제공을 구분하는지
- 핵심 영업의 지역적 배치
- 고객 집중도와 의존도
- 위의 각각의 항목에 근거한 사업의 성과나 상태

Operating segments

부문보고의 기본은 영업부문의 식별이다. 이는 경영진이 영업을 감독하고 연결실체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가장 하위수준을 나타낸다. 부문보고의 다른 모든 사항은 영업부문의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

영업부문은 다음 모두를 충족하는 기업의 부문으로 정의된다.

-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CODM: Chief Operating Decision Maker)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다음은 기업의 영업부문을 결정하기 위한 4 가지 주요 단계이다.

1. CODM을 식별한다.
2. 부문의 사업활동을 식별한다.
3. 사업활동에 대하여 구분된 재무정보가 이용 가능한지 결정한다.
4. 그러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CODM에 의해 검토되는지 결정한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CODM)

CODM은 영업부문에 자원을 배분하고 이의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직위는 기업별로 다를 것이나 관련된 책임은 거의 모든 경우에 최상위 경영진의 수준이다.

조직에 따라서는 CODM이 개인이거나 위원회일 수도 있다. 흔한 예로 CEO나 COO, 상근위원회 또는 이사회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경영진의 결정을 단순히 승인만 하는 감독기구는 CODM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CODM으로 확인된 개인이 기업의 부문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당사자인 한 그 개인의 직함은 중요하지 않다.

사업활동

별개의 영업부문으로 고려되기 위해서 부문보고에 있어서의 사업활동은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있으며(있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문에 배분된 수익 또는 비용이 없다고 해당 부문이 별개의 영업부문이 되는 것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활동이 영업부문이 되는지를 결정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Illustrative example 1 – 원가센터

원가센터를 운영하며 관리되는 제조기업의 경우, 총 고객매출액이 원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분되지 않으므로 원가센터의 수익은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원가센터 부문은 구분된 재무정보가 작성되고 CODM에 의해 검토된다면 영업부문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Illustrative example 2 – 수직적으로 통합된 영업

생산단계별로 이전가격을 청구하는 기업(예를 들면, 원유나 가스 산업)이 있을 수 있다. CODM이 그러한 이전가격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활동들이 개별적으로 영업부문으로 고려되는 것에서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원유와 가스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부문에는 (만일 CODM이 기업을 이런 방식으로 관리한다면) 탐사, 개발, 생산, 경제 및 마케팅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부문들의 일부가 외부매출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영업부문으로 고려되는 것에서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구분된 재무정보

영업부문의 정의에서 구분된 재무정보가 이용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분야에 대한 사업의 매출정보만 검토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러한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영업부문으로 식별되기 위해서 완전한 재무정보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구분된 재무정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이에 대한 간단한 답변은 CODM이 기업의 사업 활동에 대해서 자원을 배분하고 성과를 평가할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Observations from practice

구분된 재무정보의 충족여부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실무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일반적인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 부문의 재무상태표는 구분된 재무정보가 이용가능한지를 검토하는데 필수적이지 않다.
- 구분된 재무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은 상품별 매출원가나 지역별 영업손익과 같은 영업성과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다.
- 제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관련된 원가가 미미한 경우에는 매출정보만으로도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CODM의 정기적인 검토

영업부문의 식별은 CODM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구분된 재무정보(보통 ‘CODM 패키지’이라고 불림)로부터 출발한다. 이는 단순히 CEO나 이사회에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보고자료일 수도 있으므로, 많은 경우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CODM은 이미 이용 가능한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을 배분하고 성과를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구분된 재무정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매트릭스 구조나 중복적인 보고라인을 가지는 기업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예를 들어, CODM 이 두 종류의 영업성과(하나는 주요 상품군별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별인 경우)를 검토한다고 가정해보자. IFRS 8 에 따르면 이런 경우 다음 세가지 요소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1. 각 부문의 사업 활동의 성격
2. 각 부문을 담당하는 관리자의 존재
3. 이사회에 제공되는 정보 (이사회가 CODM 이 아닌 경우)

상기 요소들에 대한 검토는 사업에 대한 경영진의 지배적인 관점을 찾게 할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한 종류의 영업성과가 내부보고나 관리구조에 있어서 더 두드러져 보일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한 후에도 영업부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더 많은 판단이 요구되며, 결론에 대한 철저한 문서화가 권장된다.

기업은 다음의 질문으로 영업부문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식별된 영업부문이 CODM 이 자원을 배분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수준을 실질적으로 대변하고 있는가?
- 부문이 재무제표의 이용자에게 기업의 사업 활동과 사업이 운영되는 환경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 식별된 영업부문이 언론자료나 경영진의 인터뷰 또는 조직도, 기업의 웹사이트, 경영진 논의자료 및 기업에 대한 기타 공개된 정보와 같은 기업이 산출하는 다른 정보와 일관성이 있는가?

고려할 공통 부문

영업부문의 결정은 각 기업마다 다르다. 기업마다 개별적인 구조와 경영 보고 및 다른 사실과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부적 역할에 대한 공통된 관행이나 산업 동향이 고려되어야 하며, 감독기관은 빈번하게 이에 근거하여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Illustrative example 3 – 영업부문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한가?

본사 (Head office, Corporate office)

영업부문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본사의 역할은(예: 이자수익을 얻고 이자비용을 발생시키는 재무영업) 그 수익이 기업의 활동에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구분된 재무정보가 CODM 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면 영업부문이 될 수 있다. 단지 부수적인 수익과 비용만이 발생하는 본사(예: 회계, IT, HR 및 종업원 식당운영)는 영업부문이 될 가능성성이 높지 않다.

연구개발 (R&D)

CODM 이 구분된 재무정보를 검토한다면, 영업부문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R&D 활동이 사업의 한 부문으로 수행되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영업일 수도 있다. R&D 가 사업에 대한 통합 정도가 클수록, 해당 R&D 가 영업부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약과 생명과학 산업에서는 R&D 형태별로 영업부문이 식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단영업

영업부문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단영업이 CODM 이 검토하는 구분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사업활동을 계속한다면 중단영업은 영업부문을 충족할 수 있다. 유의적인 매각(또는 더 넓은 범위의 구조조정 계획의 일부로써의 매각)이 있으면 향후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영업부문이 되는 것인지 재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Reportable segments

모든 영업부문이 개별적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고부문이 재무제표에서 부문정보의 공시에 대한 기본이 되며, 단일의 영업부문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또는 통합된 영업부문일 수도 있다.

보고부문을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핵심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영업부문을 식별한다.
- 영업부문이 모든 통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고, 만일 충족한다면,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에) 통합한다.
- 식별된 영업부문과 영업부문의 통합된 집단이 각각 양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다. 충족하는 경우 보고부문으로 간주된다.
-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식별된 영업부문 또는 영업부문의 통합된 집단이 유사한 경제적 성격을 공유하는 지와 통합기준의 과반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다. 만일 충족한다면, (원활 경우) 그 부문들을 보고부문으로 통합한다. 개별적인 영업부문도 다른 부문과 통합되지 않았거나 양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더라도, 보고부문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식별된 보고부문의 외부매출이 기업의 외부매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지를 검토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문들을 '모든 기타 부문'이라는 명칭의 한 부문으로 통합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보고부문의 합계가 75%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적으로 보고부문을 식별하는 것이 요구된다.

통합

영업부문들의 단일 보고부문으로의 통합은 특정 요건에 근거하여 허용되며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둘 이상의 영업부문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통합될 수 있다:

- 통합은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활동과 관련 경제적 환경의 재무적 영향과 성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핵심 원칙과 일관된다.
- 부문들이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 부문들이 다음의 각각에 대해서 유사하다.
 - 제품과 용역의 성격
 - 생산과정의 성격
 - 제품과 용역에 대한 고객의 유형이나 계층
 - 제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규제환경의 성격(예: 은행, 보험 또는 공공설비)

통합에 대한 평가에는 유의적인 판단이 요구되며, 감독기관에 의해 빈번하게 지적되는 부분이다. 자주 지적되는 전형적인 사례는 단일의 보고부문만 존재한다고 공시하는 경우나 사업보고서의 앞부분에서는 더 세부적인 수준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공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유사한 경제적 특성'이라는 부문에 유의해야 하는데, 이는 실무적으로 모든 주요 특성에 걸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유사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영진은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몇 가지 특성이 가장 적절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시 위에서 나열된 모든 요건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가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기타 경제적 특성 중 일부가 유사하지 않다면 더욱 그러하다.

신규 공시 요구사항

연차개선으로 상기와 같이 통합된 영업부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이 도입되었다. 영업부문이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공유한다고 결정할 때 고려한 경제적 지표들도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 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유효하다.

Illustrative example 5 – 통합이 가능할 것인가?

지역에 근거한 영업부문

통합이 가능하다. 지리적으로 결정된 영업부문은 통합기준을 충족한다면 통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지를 결정할 때, 재무적 성과나 부문에 속하는 제품의 위험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건(인플레이션 포함), 환율정책 및 해당 국가와 관련된 통화위험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을 통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더구나, 개별 국가들이 통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IFRS 8에서 요구하는 기업 전체수준에서의 공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중요한 해외 국가별로 자산과 매출이 공시되어야 한다.

성숙단계의 사업과 신규 사업이 함께 있는 경우

통합이 가능하다. 신규 사업의 경제적 특성은 성숙단계의 사업과는 다를 가능성성이 높다. 그러나, 신규 사업의 미래 재무 성과(경쟁 및 영업위험을 포함)가 기업의 성숙단계의 사업 중 하나와 유사하고 하나로 수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유사한 특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수도 있다. 기준서는 수령에 요구되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나, 이러한 과정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감독기관에 의해 지적되는 경우도 있었다.

양적 기준

단일의 영업부문 또는 통합된 영업부문(허용되는 경우)은 양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보고부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부문의 매출, 손익, 자산을 부문합계의 해당 금액과 비교하여 결정된다.

이 기준은 보고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적용된다. 기업이 선택할 경우 더 작은 영업부문(또는 영업부문이 통합된 집단)을 보고하는 것이 허용된다. 더 작은 부문을 보고하는 것은 기술이나 미디어 산업에서 일반적인데 영업의 초기단계에서 유의적인 자산이나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분야를 강조하게 된다.

영업부문이나 통합된 영업부문이 다음의 양적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부문정보가 보고되어야 한다.

- 외부고객에 대한 매출과 부문 간 매출이나 이전을 포함 한 영업부문 수익이 내부 및 외부수익을 포함한 모든 영업부문의 수익 합계액의 10% 이상
- 보고된 부문당기손익의 절대치가 다음 금액의 절대치 중 큰 금액의 10% 이상
 -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영업부문의 이익 합계액
 - 손실이 발생한 모든 영업부문의 손실 합계액
- 부문자산이 모든 영업부문의 자산 합계액의 10% 이상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Illustrative example 6 – 양적 기준

I사는 영업부문 A~F를 보유하고 있다. 수익(내부 및 외부) 및 손익과 자산은 다음과 같다. I사는 몇 개의 보고부문이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수치는 전기와 동일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부문	총수익	당기손익	총자산
A	11,000	2,000	25,000
B	7,500	1,000	15,500
C	3,000	(1,000)	10,500
D	3,500	(500)	7,000
E	4,000	600	7,000
F	1,500	400	3,500
	30,500	2,500	68,500

부문 A, B, D, E는 명백히 수익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므로 별도의 보고부문에 해당한다.

부문 C는 수익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나, 자산 기준을 통과하므로, 보고부문에 해당한다.

부문 F는 수익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400이라는 손익이 영(0)이상의 이익을 인식한 부문들의 이익의 합계와 손실을 인식한 부문들의 손실 합계의 절대치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므로 손익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부문 F도 보고부문에 해당한다.

일관된 측정치

손익기준을 사용할 때 어떤 수준의 손익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 의문이 존재할 수 있다. 기업들은 영업손익이나 다른 내부보고상의 측정치를 빈번히 사용한다. 다음은 이에 대한 일반적 예시이며,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이자, 세금, 감가상각 및 상각비 차감 전 손익(EBITDA)
- 조정된 EBITDA
- 핵심이익(core earnings)
- 세전손익
- 세후손익
- 특정 비경상적 항목을 제외한 손익.

상기 지표 모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이 아닌 사항(Non-GAAP)’으로 고려되며, 조정사항 없이 재무제표에 공시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문보고는 사업에 대한 관리자의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위의 측정치 중 하나는 CODM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유일한 측정치일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측정치가 양적 기준을 평가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부문이 상이한 손익측정치나 재무상태표 상의 지표를 CODM에 보고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양적 기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관된 측정치가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개발되어야 한다. **CODM**에 대한 정기적 보고가 수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적절한 공시를 위해서는 일관된 지표가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표가 **CODM**이 특정 부문의 성과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측정치가 아닌 경우에도 그러하다.

더 세부적 수준에서의 통합

양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복수의 영업부문들은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위에서 언급된 통합요건의 과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단일의 보고부문으로 통합될 수 있다.

Note – 이 두 번째 평가는 앞서 언급된 영업부문의 최초 통합과는 다르다. 보고부문에 대한 기본적인 윤곽은 이 단계에서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수준에서의 영업부문의 통합은 경영진이 서로 연관되거나 의존적인 사업의 유사한 세부 부문들을 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평가의 마지막 기준

식별된 보고부문에 귀속될 외부수익은 최소한 기업의 총 외부수익의 75%가 되어야 한다. 이 시점까지 식별된 보고부문으로 동 기준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충족될 때까지 추가적인 영업부문을 보고부문으로 식별하여야 한다. 기준서는 이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적인 영업부문을 어떻게 식별할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며, 차순위의 가장 큰 영업부문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기업은 양적, 질적 요소에 근거하여 가장 의미 있는 영업부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가장 유의적인 영업부문이 이를 입증하기에 가장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잔여부분에 대한 처리

보고부문이 아닌 다른 사업활동과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는 합산되어 ‘그 밖의 모든 부문’이라는 명칭으로 공시되어야 한다.

부문정보를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금액으로 조정해 줄 때, (부문간 수익과 손익의 제거와 같은) 다른 조정항목과는 별개로 ‘그 밖의 모든 부문’으로 분류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기준에 따르면 ‘그 밖의 모든 부문’에 포함된 수익의 원천에 대해서도 설명되어야 한다.

Note – 보고부문이 아닌 부문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보고부문과 통합될 수 없다. 기준서는 중요성 판단으로 보고부문이 식별된 방식을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Segment disclosure requirements

부문보고 공시 요구항목은 경영진이 바라보는 것처럼 사업활동의 성격과 재무적 결과에 대한 정보와 기업이 영업을 영위하는 경제 환경에 대한 통찰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시 요구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완전한 목록은 IFRS 8 을 참조).

유형	요구되는 공시항목
일반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보고부문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요소에 대한 서술(전반적인 조직의 기준을 포함- 예: 지리적 구분 또는 제품별)각각의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통합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루어진 경영진의 판단¹<ul style="list-style-type: none">통합된 영업부문에 대한 설명평가되었던 경제적 지표
보고부문의 손익, 자산과 부채, 측정 기준에 대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손익측정치총 자산과 부채의 측정치 (CODM 에게 제공된다면)다수의 세부적인 공시항목(예: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부문공시의 측정치에 대한 설명보고부문간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부문공시의 측정치와 기업의 재무보고상의 상응하는 금액간 차이의 성격(예: 회계정책상 차이)
조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총 부문 수익, 부문 손익, 부문 자산과 부채 및 다른 중요한 부문의 항목들에 대한 상응하는 재무제표상의 전체 금액으로의 조정
기업 전체 수준의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각각의 제품과 용역 또는 유사한 제품과 용역의 집단 별로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외국에 귀속되는 금액과 본사 소재지 국가에 귀속되는 금액특정 외국에 귀속되는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수익금액기업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과 기업의 본사 소재지 국가에 소재하는 비유동자산 (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퇴직급여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제외).특정 외국에 소재하는 자산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비유동자산 금액기업의 수익 중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세부내용을 포함한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

¹ 이러한 판단 및 통합된 부문에 대한 설명에 대한 공시는 2010~2012 연차개선에 따른 IFRS 8 에 대한 개정으로 요구되었으며, 2014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공시가 요구된다. 조기적용은 허용된다. 만일 기업이 IFRS 8 의 개정을 조기 적용 한다면,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Observations from practice

이러한 공시요구사항 중 일부는 빈번하게 간과되거나 잘못 이해되기도 한다. 다음은 기준의 몇 가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설명이다.

- CODM은 적절한 이유가 있어 정보를 수령할 것이고 이러한 정보는 공시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CODM이 수령하는 정보는 의무적인 공시항목이다.
- 구체적으로 기업의 손익정보가 CODM에 제공된다면 그 항목이 CODM에 보고되는 손익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CODM은 감가상각비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보고부문의 ‘영업손익’과 관련된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가 CODM에 다른 정보의 일부로 제공된다면 이를 공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 이자수익은 보고부문 수익의 대부분이 이자로부터 발생하며 CODM이 순액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한 이자비용과는 별개로 공시되어야 한다.
- 부문공시정보는 연결재무제표에서와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부문정보는 CODM에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는 non-GAAP 측정치와 통화의 선택을 포함한다. 연결정보로의 조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만일 CODM이 검토하는 정보가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차이가 크다면 조정들이 복잡할 수도 있다.
- 손익, 자산과(또는) 부채에 대한 복수의 측정치가 CODM에 제공되었을 수도 있다. CODM이 자원을 배분하고 성과를 평가하는데 가장 많이 고려한 지표가 사용되어야만 한다. 둘 이상의 지표가 동등하게 고려되었다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정보와 가장 일관된 정보가 공시되어야 한다.
- 기업이 해당 정보가 상업적으로 민감하다고 판단하였더라도, 기준서는 경쟁상 손해를 고려한 특정 면제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Changes to the business

기준서는 보고부문의 재평가 시기를 강제하거나 재평가를 야기시키는 지표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경영진은 현재의 영업부문 공시가 여전히 적절한지에 대해 매 보고일에 고려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일부 유형의 변경은 기업의 부문보고를 수정할 수 있는데, 이런 변경은 다음을 포함한다.

- CODM 의 변경
- CODM 패키지의 변경
- 조직구조의 변경(예: 구조 조정)
- 사업활동의 유의적 집단의 처분이나 취득
- 예산 절차 및 예산이 결정되는 수준의 변경

많은 변경들은 기업의 경영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명확할 것이다. 일부는 다소 미묘하다. 조직도상의 이동은 내부적으로는 강조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상위 수준의 감독에 변경이 없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인사변경으로 부문 경영진이 추가 되거나 (예: 예전에 하나였던 경영진을 둘로 변경) 감소 되기도 한다(예: 한 사람이 다른 둘을 감독하도록 승진된 경우). 영업부문에 변경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변경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만일 변경이 있었다면, 보고부문에 대한 그러한 변경의 영향도 평가해야 한다.

비교기간은 과거 정보를 당기의 부문보고에 근거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재작성되어야 한다.

More than disclosure

투자자를 경영진의 관점과 연결시켜주는 재무제표의 정보로 부문보고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공시된 정보의 많은 부분은 사업보고서의 이사의 경영진단에서 어느 정도 논의된다. 그러나, 부문공시의 체계는 내부보고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며, 연결재무제표로의 조정사항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공시이다.

영업부문은 외부보고와 내부보고를 연결시켜주는 주는 기초가 되며, 단순한 공시 이상으로써 영향을 미친다.

사업결합 및 처분

유의적인 사업결합이나 처분은 미래 영업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부문보고는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거래가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지와 기업의 어떤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될지, 그리고 사업결합의 경우에는 가장 큰 혜택을 받을 부분이 어디인지(예를 들어, 영업권의 배분은 미래의 시너지와 원가절감을 나타냄)에 대한 비전을 제공한다.

손상검사

영업부문은 유·무형의 자산에 대해 손상검사가 수행될 수준을 결정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한다.

i. 영업권 배분

- 사업결합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현금창출단위(CGU)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되어야 하나, 개별 영업부문보다 상위 수준에서 이러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준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이러한 배분에 따르므로, 부문에 배분된 영업권은 해당 부문으로만 평가되어야 한다
- 영업부문의 변경은 경영 구조의 변경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영업권이 내부적으로 관찰되는 방식에 있어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손상검토 목적으로 영업권을 조정된 현금창출단위들에 재배분하는 것은 허용된다.

ii. 현금창출단위의 결정

- 영업권 배분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현금창출단위는 영업부문보다 클 수 없다. 유형자산의 손상검사는 현금창출단위에서 수행되며,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는 동일한 수준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서 수행된다. 이러한 제약은 복수의 영업부문에서의 현금흐름이 자산 집단의 손상검사에 사용되는 것을 제한한다.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